

<목 차>

원 남 저 수 지 전 망 타 워 조 성 공 사
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

과 업 지 시 서

2026. 8.

음 성 군

I. 과업의 개요

1. 과업의 명칭	3
2. 과업의 목적	3
3. 과업의 범위	3

II. 일반사항

1. 과업수행기준	4
2. 참여기술자	4
3. 착수계 등 제출	4
4. 보안사항	5
5. 용역내용변경	5
6. 하자에 대한 책임	6
7. 보고 및 협의	6
8. 기타사항	6

III. 과업수행 세부내용

1. 소규모환경영향평가	7
--------------------	---

IV. 성과품

1. 성과품 납품 및 제출부수	19
2. 과업수행 예정공정	19

I . 과업의 개요

1. 과업의 명칭

- 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- 원남저수지 관광명소화를 통해 관광도시로서 음성군 위상 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남저수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존 및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전망타워 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생태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

3. 과업의 범위

3.1. 공간적 범위

- 위 치 :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산 194
- 면 적 : 약 33,021㎡

3.2. 시간적 범위

-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(180일간)
-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,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
 -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

3.3. 내용적 범위
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II . 일반사항

1. 과업수행기준

-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, 용역성고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·변경을 할 수 없다.

2. 참여기술자

-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. 단, 추가투입이나 사망, 지병,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,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, 이로 인한 용역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
3. 착수계 등 제출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착수계
 - 현장대리인계
 - 참여기술자명단
 - 보안각서
 - 예정공정표
 - 과업수행계획서
 - 과업수행조직,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
 - 부문별 사업수행방법(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)

-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

4. 보안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-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
-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.
-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5. 설계내용변경

- 관련법령,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,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,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 할 수 있다.
-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,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.

6. 하자에 대한 책임

-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,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, 재설계(계획)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7. 보고 및 협의

-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,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매월 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,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,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.
-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(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)이 있을 시 과업 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8. 기타사항

-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 과업에 관련하여 공사 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,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최종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, 검토자,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Ⅲ. 과업수행 세부내용

1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1-1. 과업의 범위

본 과업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업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, 수환경, 토지환경, 자연생태환경,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·분석하고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·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,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득하는 데 있다.

1-2. 주요과업내용

가. 사업의 개요 검토

나. 지역개황,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

다. 환경현황조사

라. 입지의 타당성

마.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·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

바. 종합평가 및 결론, 부록 작성

사. 관계기관 협의

1-3. 과업의 일반지침

가.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‘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2022.

3. 1, 환경부고시 제2021-300호’에 의하여 작성한다.

나.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다.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현황조사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,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.

바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1-4. 세부과업내용

가. 사업의 개요

1) 사업의 배경, 목적, 필요성,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,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,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.

나. 지역개황

1)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, 그 내용을 1:25,000 및 1:50,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.

2)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,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한다.

다.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

1)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,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.

2)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,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.

- 3)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,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.

라. 입지의 타당성

- 1)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·지역 지정 현황,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, 주요 동물상(법정보호종)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.

마. 환경현황조사

1) 기 상

- 가)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·정리하여 제시한다.

- 기온, 강수량, 습도(년, 월평균 및 최고·최저)
- 풍향, 풍속(방위별, 년·월 평균풍속,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, 탁월풍, 정온발생빈도 등)
- 적설량, 일사량, 운량, 안개(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) 및 스모그 발생량, 빈도 등
- 태풍 및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

- 나)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.

- 다)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
- 조사항목을 월별,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.
- 풍향·풍속은 계절별, 연간 바람장미도(wind rose)를 작성한다.
-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,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, 계절별 분석·정리한다.

-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·정리한다.

2) 대기질

- 가)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, 밀집주거지, 사업장,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, 연료종류, 연료사용량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,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.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, 규제기준,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.

- 나) 조사범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, 지형,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, 주택의 밀집도,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.

- 다)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.

- 조사지점 :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중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.
- 조사항목 : PM₁₀, PM_{2.5}, NO₂, SO₂, CO, O₃, Pb, C₆H₆ 등 8개 항목

- 라)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, 일평균치,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.

3) 수질

- 가) 하천, 호소,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, 지하수 현황, 수문현황, 수자원 이용상황, 오염원,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.

- 나)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

는 수역으로 한다.

다)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.

○ 하천수질

- 조사지점 :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
- 조사항목 : 유량, 수온, pH, BOD, COD, SS, DO, T-P, T-N, 총대장균군, Chl-a, Cd, As, CN, Hg, 유기인, PCB, Pb, Cr⁺⁶, C₆H₆, ABS, TOC 등 29개 항목

○ 지하수질

- 조사지점 :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지하수계
- 조사항목 : 유량, 수온, pH, CN, 페놀류, Aa, Hg, TCE, PCE, 카드뮴, 납, 크롬 등 20개 항목

라)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
○ 하천수질 현황

-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
-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
-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

○ 수문 현황

- 하천 형태, 지천 유입상황,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

○ 수자원 이용상황

- 계획지역과 연관, 도표로 정리

○ 주요 오염원 상황

- 오염물질 발생량,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, 기술

4) 수리·수문

가) 조사는 수문관측자료, 유출, 하천특성, 저수지특성,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,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.

나)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
-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, 기술
-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
- 하천의 형태, 지천의 유입상황,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

5) 토지이용

가) 계약상대자는 용도별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), 지목별 토지이용현황, 공사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.

나)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.

다)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
-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
- 지목별,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

6) 토양

가)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.

○ 토양오염도

- 조사지점 :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

양

- 조사항목 : Cd, Cu, As, Hg, Pb, Cr⁺⁶, Zn, Ni, F, 유기인화합물 등
17개 항목

나) 지역의 특성,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·정리하며,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.

7) 지형·지질

- 가) 조사는 지형형상, 지질상황,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.
- 나)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,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,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.
- 다)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- 지형분류,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, 정맥, 기맥, 지맥의 분포현황도
 - 특이한 지형,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,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
 -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
 -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

8) 동·식물상

- 가) 육상 동·식물상
- 식물상과 식생
 -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, 종 다양도의 산출
 -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(법정보호종, 특산종, 희귀·희소종, 특정군락 등)
 -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(현존 식생도)

-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

○ 육상동물

-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, 주요 종의 개체수, 종 다양도의 산출
-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(법정보호종, 특산종, 희귀·희소종, 특정개체군)

나) 육수 동·식물상

○ 수생식물군집

- 종조성, 종다양도
- 고유종, 희귀종,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·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.
- 식물군락의 종류, 종 조성 및 분포상황,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.

○ 수생동물(수서동물, 저서동물)

- 수생동물의 종류, 현존량, 분포상태,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.
-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, 현존량,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.

○ 어획대상 동물

-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, 개체수,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
-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, 개체수 등

○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

- 지형·지질, 수질, 저질 및 환경의 현황,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

다) 유의사항

- 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,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, 문헌 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.
-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9) 자연환경자산

- 가)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(위치, 지정내역 등)을 조사하고,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.
- 나)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.
- 다)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·습지 등의 위치, 지정내역,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,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동·식물, 역사적·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.

10) 친환경적 자원순환

- 가)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·처분상황, 분뇨발생 및 처리·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·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.
- 나)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.
- 다)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 - 쓰레기발생 및 처리·처분상황
 -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
 -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

- 분뇨발생 및 처리·처분상황
 -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
 - 분뇨처리시설 위치도
-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·처분상황
 -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
 -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,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.
 -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.

11) 소음·진동

- 가)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, 주요 발생원의 상황, 토지이용의 상황, 교통량, 차종구성,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, 법령 등을 조사한다.
- 나)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,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.
- 다)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.
 - 소음
 - 조사개요,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
 -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,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
 - 진동
 - 조사개요,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
 - 진동원의 종류, 위치, 규모 및 수
 -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

-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

12) 위락·경관

- 가)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.
- 나)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.
- 다)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:25,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, 명칭, 면적, 지정일자,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.
- 라)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,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, 산지, 분지, 경사분포, 귀중한 식생분포, 천연림,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,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·지구를 파악한다.
- 마)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,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.
- 바)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사)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, 이 지역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.

바.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·평가 및 환경보전방안

- 1)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(직접·간접적 영향, 단기·장기적 영향, 정·부의 영향)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,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

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.

- 2)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,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3)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.

사. 종합평가 및 결론

- 1)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,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,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.

아. 부록

- 1)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
 - 가)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.
 - 나) 환경현황 조사,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,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.
- 2)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
 - 가)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(지정일자, 지정기관, 지정번호 등 포함)
 - 나)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.
 - 다)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(소속, 직, 성명, 전공분야 등)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3) 용어 해설 등
 - 가)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.

Ⅳ. 성과품

1. 일반사항

가.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CD-ROM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.

나.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.

구 분		규 격	부 수	비 고
소규모 환경영향평가	- 보고서(현황조사 등 전체) - 성과품 CD	- A4 -	10부 1식	-

주) 1.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.

2.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.

2. 과업수행 예정공정

기 간(월) 공 중	공 정									비 고
	10	20	30	40	50	60	70	80	90	
계										
1. 현황조사, 분석										
2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										
3. 최종보고서 작성										

※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, 주민설명회,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